

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(제33조제3호 관련)

1.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(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·수량·배열순서·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본다)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.
2.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주기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 - 가. 주기별 최초 검사: 주기별 누적생산량이 3천대를 초과하는 시점에 실시
 - 나. 후속 검사: 주기별 최초 검사 이후 6개월마다 실시
3.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
유리잔류염소, 색도, 탁도, 클로로포름, 그 밖에 특별히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한 항목
 - 나.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
톨루엔, 세제, 카바릴, 경도, 납, 비소, 염소이온, 질산성질소, 대장균군. 다만, 가목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한다.
4.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기의 기준·규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